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4 - 091호

## 2024년 조달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기관추천 참여기업 상시모집 공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2024년 조달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지정 후보 상품추천을 위하여 지역 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기관추천을 진행하고 있으니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기업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2024년 08월 21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 개 요

#### □ 사업목적

-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을 통한 판로개척을 위한 공공조달 시장진입 지원

#### □ 모집대상

-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제조업체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세종시가 본사인 기업

\* 해외 제조 OEM은 지정신청 불가능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 《2024년 벤처나라 지정신청 관련 안내사항》

- ① (지정신청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국내 OEM인 경우 지정신청 및 상품등록 허용하나,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되어야 하며 직접생산이 없는 경우 주문 불가능
- ② 창업기업확인서 첨부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제품으로 납품 가능
- ③ 청년기업(만 39세, 대표 또는 대표이사 기준) 우대사항 - 지정심사시 가점 1점 부여

- 관련규정 제6조에 다른 신청제외대상은 지정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li> <li>▷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li> <li>▷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 상품</li> <li>▷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li> <li>▷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li> </ul>

□ 추천규모: 3개사 이내 (회차별)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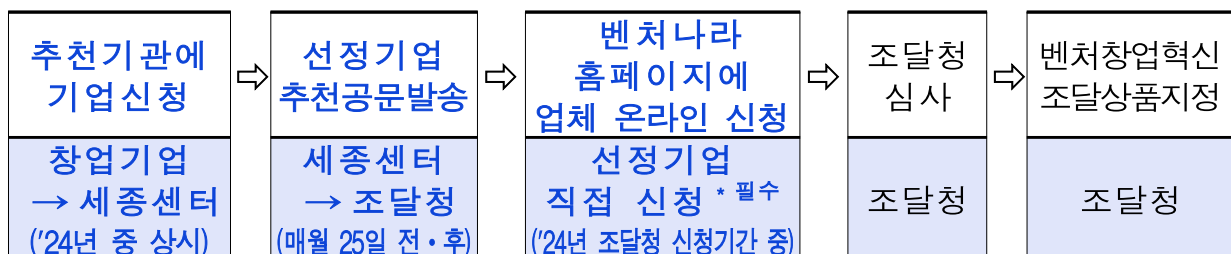
- 추천기관 후보상품 선정 시, 조달청 심의 가점부여(2점)
- 선정기업 전문가 컨설팅 지원(필요시, 선착순)

**2** 추천절차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의 평균점수 및 신인도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경우 추천
- 평가위원: 3인 이상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서면평가 예정
- 평가항목: 조달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후보추천 평가기준에 의거함  
\* 기술개발의 필요성, 난이도, 혁신성, 적용성, 차별성, 품질·성능 신뢰성 등

□ 선정절차



3

신청 · 접수

□ 공고기간

○ 공고일 ~ 2024. 12. 31.(화)

※ 해당 공고는 상시모집 공고로 『조달청 벤처나라 공고』 수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4. 12. 31.(화) ※ 상시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접수: [sejong-stup@ccei.kr](mailto:sejong-stup@ccei.kr)

\* 접수메일 외 접수된 서류는 미접수로 간주 / 수신여부 확인연락 필수

\* 메일제목: 벤처나라 기관추천 신청\_기업명

\* 파일명: 2024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기관추천 신청서\_기업명.pdf

○ 문의처: 창업보육팀 044-999-0239

□ 제출서류

구분	항 목	제 출 서 류
필수사항	서식 1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기관추천 신청서 1부.
	서식 2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서식 3	추천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서식 4	상품설명서 1부.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창업기업·벤처기업 확인서 해당시)
해당사항	첨부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첨부 3	최근 2년간('22년~'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첨부 4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특허등록원부(실용신안등록원부)
	첨부 5	품질인증서(KC인증,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과 적합등록 등), 시험성적서 등
	첨부 6	투자계약서 1부.
자유사항	자유양식	기업제품 및 서비스 자료 1부.

## 참고1

## 평가 면제 대상

### □ 기술·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8조)

1. 성능인증(EPC) 제품
2. 신제품(NEP)
3.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제품
4. 신기술(NET) 제품(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녹색인증제품
6.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7.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품질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 □ 기술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9조)

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3. 공공기관 개발선정품(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
4.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
5.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 □ 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10조)

1. 우수재활용인증제품(GR)
2. 환경표지(환경마크) 제품
3. 성능인증(K마크) 제품
4. 고효율에너지 인증 표시 제품
5. 품질보증조달물품
6. 부품소재 전문기업 신뢰성 인증 제품
7.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품질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